

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  
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檢 討 報 告 書

【박정자 의원 발의】



2021. 10. 22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396호로 2021년 10월 8일 박정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 및 준용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2조, 안 제6조)  
나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,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 (2021. 10. 6. ~ 10. 12.)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### ○ 주요 개정내용은

가.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

- 안 제1조에서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5조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로 변경하였고,
- 안 제2조제1호에서는 「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」 제50조를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55조로 변경하였으며,
- 안 제2조제2호에서는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8조의4를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40조로, 「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」 제52조제1항을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59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으며,

나.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하였음.

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이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으로 전부개정(2013. 5. 22.)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,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건설기술 진흥법

**제40조(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)**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·시방서(示方書),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,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·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·공사중지(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)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~ ⑥ (생략)

##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

**제55조(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)** ① 법 제39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”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.

1.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
2.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, 터널, 배수문, 철도, 지하철, 고가도로, 폐기물처리시설,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(이하 “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

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
건설공사

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3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 문화재의 수리·복원·정비공사
2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4호·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·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
3.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[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(이하 “건설사업관리기술인”이라 한다)를 포함한다]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
4. 공사의 내용이 단순·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
5.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,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
6.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
7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·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, 방사선발생장치, 관계시설,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 시설등의 건설공사(이하 “원자력시설공사”라 한다)

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(工種)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59조(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) ① ~ ② (생략)**

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공계획의 검토
2. 공정표의 검토
3.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(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)
4.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·확인·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,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·확인
5. 재해예방대책의 확인,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·확인,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
6.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
7.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
8.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
9.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
10. 준공검사
11.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
12.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
13.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④ ~ ⑦ (생략)